

(環 境 課)

I 기 본 현 황

일 반 현 황

○. 직 원 현 황

직 급	계	5급	6급	7급	8급	9급	기 능
정 원	19	1	3	8	5	2	
현 원	20	1	3	4	8	4	

○. 과 직 제 및 계 별 분 장 사 무

환경 관리계	환경 지도계	생활 공해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환경개선부담금 · 배출시설 허가 · 환경보전관리 홍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수질, 대기오염 지도점검 · 소음, 진동 배출업소 지도점검 · 무허가 배출업소 단속 · 행정처분 및 배출 부과금 부과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자동차 공해단속 ·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처리 및 지도점검 · 유독물업소 관리

○. 환 경 현 황

가. 배 출 시 설 현 황

(단 위 : 개 소)

요 인 구 분	계	대 기	수 질	소 음·진 동	비 고
총 계	758	191	389	178	
허 가	475	191	193	91	
신 고	283		196	87	

나. 유 해 화 학 물 질 관 리 업 소 현 황

(단 위 : 개 소)

계	보 관 업	취 급	판 매 업	비 고
262	1	12	249	

Ⅱ '96 주요 업무 보고

기 본 방 향

맑은 공기 보전을 위하여 청정연료의 보급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, 아울러 깨끗한 한강물 보전을 위하여 폐수의 무단방류 등 한강오염행위에 대한 지도·단속을 강화하고 세계화 개방화에 따른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목 표

구 분	항 목	단 위	환경기준	'95.	'96	'98	비 고 (11월말)
대 기	아황산가스 (SO ₂)	PPM	0.030	0.023	0.020	0.018	'94 : 0.022 '95 : 0.023
수 질 (안양천)	생 물 학 적 산 소 요 구 량 (BOD)	PPM	10.0	13.4	13.0	12.5	'94 : 19.7 '95 : 13.4

추진 방향

- 아황산가스(SO₂) 저감
 - LNG 보급 확대 지속추진
 - 자동차배출가스 단속강화
- 한 강 수 질 보 전
 - 폐수발생사업장 무단방류 단속
 - 하천오염방지 및 순찰강화
- 생 활 소 음 방 지
 - 소음발생사업장 관리강화
 - 생활소음 발생원 지도계몽
- 환 경 보 전 교 육 및 홍 보
 - 환경보전교육
 - 시민 홍보

【 맑 은 공 기 보 전 대 책 】

추진방향

- 청정연료 보급 확대 - 지속 추진
- 오염물질 배출원 - 관리 강화
- 매연 배출업소 - 지도·단속 강화

가. 아황산가스 점검

1) 대기배출업소 191개 업소 지도 점검 실시

○ 대표자 및 관리인 교육 : 년 2회 실시

○ 업소별 지도점검 : 년 1-4 회

○ 점검내역

-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
- 대기 오염도 검사

2) 공동주택 청정 연료 전환

○ 대 상 : 평균 전용면적 18평 ~ 21평미만

공동주택 12개소

○ 전환연료 : B-C 유 → 경유 또는 LNG

3) 매연 배출가스 단속강화

○ 자율적인 배출가스저감 유도

- 배출가스 저감운동 및 홍보강화
- 매연단속 초소운영 - 년중 단속 실시

○ 운행배출가스 단속강화

목표 → 10,000대

단속방법 →

- 관내 통과 차량 거점 단속
- 매연발생차량 비디오 촬영단속 및 주민 신고제 실시

【 수 질 보 전 대 책 】

추진 방향

- 폐수 발생 사업장 - 관리 강화
- 하천 오염 방지 - 순찰 강화
- 시민 홍보 _____ 강 화

가. 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

- 대 상 : 389 개소 (허가 : 193개소, 신고 : 196개소)
- 지도점검 계획
 - 관리인 교육 : 년 2 회
 - 지도 점검 : 년 1~3회 (신고업소, 모범업소 1회 - 기타위반업소 2,3회)
 - 점검 내역
 -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
 -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조업여부
 - 폐수 무단방류 여부

나. 하천 수질 오염 사고방지

- 대 상 : 안양천 (4.8km) 도림천 (4km) 대방천 (2.7km)
- 점검계획 : - 하천감시강화
 - 순찰반 운영 - 주 1회 이상 순찰
 - 미처리 폐수 및 특정 폐기물 유입 여부 조사
 - 기타 환경 오염 행위

다. 폐수 무단방류 추적 체계 확립

- 수질조사대상 : 관내 8개 배수지
- 조사항목 : 특정 수질 유해물질
- 추진내역 :
 - 배수지별 유역도 및 폐수배출업소 현황작성
 - 배수지 유입수 조사

【 소 음 . 진 동 방 지 대 책 】

추진방향

- 소 음 발 생 사 업 장 관 리 강 화
- 생 활 소 음 발 생 원 지 도 계 몽

가. 소음·진동 배출업소 지도 점검

○ 대 상 : 178 개소

- 추진계획
 - 관리인 교육 : 년 2 회
 - 지도 점검 : 년1회 (민원 발생시 : 수시점검)
 - 점검 내역
 - 방지시설 적정여부
 - 자가측정 이행여부
 - 배출시설 변경여부

나. 생활소음 발생원 지도계몽

- 대 상
 -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요하지 않는 사업장
 - 확성기 소음, 공사장 소음등
- 추진계획
 - 공한문 발송 : 년 1회
 - 반상회보를 통한 홍보 : 년 2회
 - 지도점검 : 민원발생시

【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징수 】

추진 방향

-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및 쾌적한 시민생활 환경조성
-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한 환경개선의 투자자원 합리적 조달

가. 부과대상

- 건물 : 소비유통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시설물
 - 연면적 160㎡ 이상 건물
 - 단, 공장 창고 주차장등 제외. 주택 면제. 공공용 50%경감('97. 2기분까지).
- 자동차 : 비사업용 경유 자동차
- 납부의무자 : 부과기준일 (6.30, 12.31현재) 시설물 및 자동차 소유자

나. 부과 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총 계		시 설 물 분		자 동 차 분		비 고
건 수	금 액	건 수	금 액	건 수	금 액	
61,800	4,448	9,100	2,680	52,700	1,768	

다. 부과 기간 및 납기

○ 부과기준일

반기 별	부 과 기 준 일	부 과 기 간	납 기	비 고
1 기 분	매년 12월 31일	7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	다음연도 3월 16일 부터 3월 31일 까지	
2 기 분	매년 6월 30일	1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	9월 16일 부터 9월 30일 까지	